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39
----------	-------

발의연월일 : 2025. 8. 25.

발 의 자 : 양문석 · 조계원 · 양부남
전용기 · 이광희 · 최혁진
최민희 · 허성무 · 박민규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현행법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임.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악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콘텐츠 유통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제7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온라인비디오물.”을 “온라인비디오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

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

제50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온라인비디오물”을 각각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를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0조의4제3호”를 “제50조의4제3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0조의4제2호”를 “제50조의4제2호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3호”로 한다.

제72조제1호 및 제2호 중 “영상물등”을 각각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를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상물등”을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중 “온라인비디오물”을 각각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음악영상물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최초로 지정한 날까지 이 법 시행 전의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급분류)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2. ----- -----온라인비디오물 <단서 삭제>
<신설>	2의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

3. ~ 5. (생략)

② ~ ⑦ (생략)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 7. (생략)

② (생략)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등”이라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

1.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

2.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호 및 제2호-----

4. 제50조의4제3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4호-----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0조의4제2호와 「음악산업진흥에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u>관한 법률」 제17조의4제3호</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제72조(직무) ----- -----.
1. <u>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 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 에 관한 사항</u>	1. <u>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u> ----- -----
2. <u>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 에 관한 사항</u>	2. <u>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u> ----- -----
2의2. <u>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 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 항</u>	2의2. <u>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17조의4제1호 및 제2 호</u>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u>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 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u>	5. <u>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u> ----- -----
5의2. <u>등급분류책임자 및 <u>온라 인비디오물</u> 이용자 교육에 관 한 사항</u>	5의2. ----- <u>온라 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u> -----
5의3. <u>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u>	5의3. <u>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 영상물등</u>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3조(구성) ① (생 략)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
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
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
촉한다.

③·④ (생 략)

제7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상물등·음악영상
물등-----

-----.

③·④ (현행과 같음)